

서울특별시

관이 416-

70. 2. 11.

수신 기획관리관

참조 법무과장

제목 조례개정 의뢰 (남산터널 2호선)

1. 기획관리관 운영규칙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유료도로통행요금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속 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첨부 1. 개정이유 3부.
- 2. 공포안 3부.
- 3.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 3부.
- 4. 기타(허가서 사본) 1부. 끝.

관 리 제 2 과 장

1970. 2. 13

서울특별시
법무과

232

관장

관장

2/17

0217

개 정 사 유

1. 현재 시공중인 남산 지하 터널 2호선을 유로도로로 운영
관티키 위하여 유로도로 개설허가 신청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였던바
2. 이에 따라 69. 6. 19. 허가를 하였기 통행료 징수를 위하여
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임. 끝.

개 정 사 유

1. 현재 시공중인 남산 지하 터널 2호선을 유료도로로 운영
관리를 위하여 유료도로 개설허가 신청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였던바
2. 이에 따라 69. 6. 19. 허가를 하였기 통행료 징수를 위하여
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임. 끝.

개 정 사 유

1. 현재 시공중인 남산 지하 터널 2호선을 유료도로로 운영
관리키 위하여 유료도로 개설허가 신청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였던바
2. 이에 따라 69. 6. 19. 허가를 하였기 통행료 징수를 위하여
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임. 끝.

공 포 안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
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0. . .

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(신설)

한다.

"별표"중 1-4 다음에 "별표" 1-5를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. 끝.

공 포 안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
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0. . .

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(신설)

한다.

"별표"중 1-4 다음에 "별표" 1-5를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. 끝.

공 포 안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
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0. . . .

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(신설)

한다.

"별표"중 1-4 다음에 "별표" 1-5를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. 끝.

223
0223

" 별 표 " 1 - 5

가. 도로및 노선명 : 특별시도 남산지하유도도로2호선

나. 징 수 구 간 : 자 장충동 민족문화센터
지 이태원 군인아파트

다. 징 수 기 간 : 자 1970. 8. 15.
지 1990 8. 14.

라. 요 금 액

차	종	별	1	요	금	1	비	고	1
1	승	용	차	1	60원	1			1
1	삼	륜	차	1	60원	1			1
1	이	륜	차	1	30원	1			1
1	버	스		1	90원	1			1
1	확	물	차량	1	90원	1			1
1	특	수	차량	1	120원	1			1
1				1		1			1

끝.

224

0224

" 별 표 " 1 - 5

가. 도로및 노선명 : 특별시도 남산지하유료도로2호선

나. 징 수 구 간 : 자 장충동 민족문화센터
 지 이태원 군인아파트

다. 징 수 기 간 : 자 1970. 8. 15.

지 1990 8. 14.

라. 요 금 액

차종별	요	금	비	고
승용차	60원	1	1	1
삼륜차	60원	1	1	1
이륜차	30원	1	1	1
비스	90원	1	1	1
확물차량	90원	1	1	1
특수차량	120원	1	1	1
		1	1	1

끝.

0225

1225

" 별 표 " 1 - 5

가. 도로및 노선명 : 특별시도 남산지하유도도보2호선

나. 징 수 구 간 : 자 장충동 민족문화센터
지 이태원 군인아파트

다. 징 수 기 간 : 자 1970. 8. 15.
지 1990 8. 14.

라. 요 금 액

차종별	요금	비	고
승용차	60원	1	1
삼륜차	60원	1	1
이륜차	30원	1	1
비스	90원	1	1
화물차량	90원	1	1
특수차량	120원	1	1
		1	1

끝.